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12일, 유용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3.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국방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 의원)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

서 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국방개혁법」상 목표연도는 이미 경과하였고, 법률에 명시된 수치 목표 역시 대부분 달성된 바, 해당 조항에서 연도 및 수치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전투근무지원 분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별도로 제정된 「군책임운영기관법」과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발의 이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국방부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목표로 수립·발간할 예정이므로 법 발의 이후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본 부칙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붙임]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2025년 5월 발의된 이후 같은 해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입법 여건에 변화가 있었고 새 정부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2026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칙 제2조는 계획 수립의무의 중복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부칙 제2조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종합계획 수립</u> <u>에 관한 특례) 국</u> <u>방부장관은 제25</u> <u>조에 따른 상비</u> <u>군 규모의 적정</u> <u>수준을 정하여</u> <u>이 법 시행 이후</u> <u>1년 이내에 제5</u> <u>조에 따른 최초</u> <u>의 국방개혁기본</u> <u>계획을 수립하여</u> <u>야 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삭 제></u>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를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방업무의”를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으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목표”를 “제1항의 적정”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을 “정할”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으로,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를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를 “상비병력규모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u>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 ----- ----- ----- -----<u>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u>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u>----- -----<u>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u>----- ----- -----. ② -----<u>군 책임운영기관</u>----- ----- -----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 ⑤ (생략)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생략)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② 제1항의 적정-----정할-----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전력규모는 <u>2020년까지</u> <u>상비병력규모와</u> 연동하여 개편 • 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u>상비병력규모와</u>----- <u>모와</u>----- -----. ③ (현행과 같음)
--	---